

신종감염병 대유행 위기 시 백신 신속도입을 위한 범정부 총력대응 근거 마련

-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총리훈령) 제정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협의체 운영규정’)」이 제정(국무총리훈령)되었으며, 2026.1.7.(수) 관보 게재와 동시에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 운영규정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 대유행 위기 시 국내외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중인 백신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도입·활용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코로나19 초기에도 백신 도입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가 구성되었으나, 협의체 구성의 근거 부족과 임시적인 운영으로 지속적인 대응체계로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번 운영 규정을 통해 범정부 협의체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백신 신속도입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체계가 마련되었다.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감염병 확산으로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시 질병관리청에 설치하며, ▲백신수급계획의 수립·조정, ▲백신 허가·승인 관련 정보 공유, ▲해외 백신수급 동향, ▲부처별 추진계획 등에 대해 협의·조정한다.

협의체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장이며 각 부처(외교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실장급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정부조직법 개정(2026.1.2.)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 등으로 변경

또한 사전검토 중심의 협력체제로 질병청 차장 및 각 부처 국장급의 실무협의체를 두며,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필요시 관계기관·단체에 자료제출 및 의견 제시, 전문인력 파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범정부 협의체 설치 및 운영규정 마련으로 감염병 위기 시 백신 신속도입을 위한 부처간 협업체계가 공식화되었다.”라고 밝히며,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향후 감염병 대유행 조기 종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붙임>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총리훈령, 전문)

담당 부서	의료안전예방국 백신수급과	책임자	과 장	황호평 (043-719-6810)
		담당자	사무관	김남혁 (043-719-6819)

국무총리훈령 제910호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신종감염병의 대유행 위기에 대응하여 국내외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백신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도입·활용하기 위하여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감염병의 확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재난상황을 말한다)에 따른 백신의 도입·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백신의 물량 및 일정 등 수급계획의 수립·조정 에 관한 사항
2. 백신의 허가·승인과 관련된 정보의 공유 등에 관한 사항
3. 해외 백신수급 동향에 관한 사항
4. 백신 도입 관련 부처별 추진계획의 협의·조정 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장이 되며,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2.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3.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4.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5.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6. 질병관리청 차장

7.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백신 도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직위의 직무등급이 가등급인 공무원

③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장이 된다.

제4조(실무협의체의 구성 등) ① 협의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둔다.

1. 제2조제2항에 따른 협의체의 협의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

2.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질병관리청 차장으로 하며,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외교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직위의 직무등급이 나등급인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백신 도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직위의 직무등급이 나등급인 공무원

④ 실무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질병관리청 백신수급과장이 된다.

제5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①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협의체등”이라 한다)의 위원장은 백신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소속 임직원의 파견이나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체등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수당 등) 협의체등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과 회의에 출석

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체등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7조(비밀 준수 의무) 협의체등의 위원장과 위원, 협의체등에 파견된 공무원·임직원 및 협의체등에 출석한 전문가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3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